# 푸드트럭 창업·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푸드트럭 창업·운영 ]**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는 영업 허용 장소,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안내하고, 창업 준비 이후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푸드트럭 위생관리, 그리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사항의 변경 및 폐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운영 ..... 1
1. 푸드트럭 창업 준비 ..... 4
1.1. 푸드트럭 알아보기 ..... 4
1.1.1. 푸드트럭의 이해 ..... 4
1.2. 창업 준비 ..... 8
1.2.1. 영업 허용 장소 등 ..... 8
1.2.2.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 12
1.3. 영업시설 설치 ..... 16
1.3.1. 자동차 구조변경 ..... 16
1.3.2.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19
1.4. 사전 위생관리 ..... 21
1.4.1.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21
2. 푸드트럭 영업 ..... 24
2.1.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24
2.1.1. 영업신고 ..... 24
2.1.2. 사업자등록 ..... 26
2.2. 푸드트럭 위생관리 ..... 28
2.2.1. 위생·시설 관리 기준 ..... 28
2.2.2. 위생 취약점 및 위생관리 수칙 ..... 30
2.3. 운영 시 준수사항 ..... 35
2.3.1. 영업자 준수사항 등 ..... 35
3. 푸드트럭 영업사항의 변경 및 폐업 ..... 38
3.1. 영업사항의 변경 ..... 38
3.1.1. 변경신고 ..... 38
3.2. 푸드트럭 폐업 ..... 40
3.2.1. 폐업신고 ..... 40

# 1. 푸드트럭 창업 준비

## 1.1. 푸드트럭 알아보기

### 1.1.1. 푸드트럭의 이해

#### 푸드트럭이란

##### "푸드트럭"이란?

▪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이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참조).

>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를 "푸드트럭"과 병행하여 지칭합니다.

##### 푸드트럭 허용 업종

▪ 푸드트럭 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바목 참조).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푸드트럭 사업유형

| 구분 | 주요 특징 |
|---|---|
| 축제결합형 |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br>예: 서울 밤도깨비 축제 |
| 청년창업 지원형 | 청년에게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창업 기회 제공<br>예: 고속도로 졸음쉼터 |
| 노점상 대체형 |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 및 외관·위생 등 향상<br>이동영업 확산의 계기 |
| 전통시장 상생형 |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br>비교적 한가한 야간시간에 전통시장에서 영업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2017.4.14. 3면 참조>

## 푸드트럭 영업 준비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 단계별 준비기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절차 | | 세부 내용 |
|---|---|---|
| 1 | 푸드트럭 영업자<br>모집공고 응모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br>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br>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 | | |
| 2 | 사업자 선정<br>(계약체결) |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br>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br>선정자는 허용 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br>※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 ▼ | | |
| 3 | 자동차 구조변경<br>신청 및 승인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br>자동차 구조변경 신청<br>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 ▼ | | |
| 4 | 자동차 구조변경<br>시공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br>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br>※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 ▼ | | |
| 5 | 액화석유가스<br>시설시공 | 담당 기관: 가스시설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br>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br>※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
| ▼ | | |

| | | |
|---|---|---|
| 6 | 액화석유가스<br>완성검사 |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br>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br>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

▼

| | | |
|---|---|---|
| 7 | 자동차 구조변경<br>작업완료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br>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장치 변경 작업내역 등을 전산입력 |

▼

| | | |
|---|---|---|
| 8 | 자동차 구조변경<br>검사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br>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 신청<br>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

| | | |
|---|---|---|
| 9 | 자동차등록증 발부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br>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후 발급<br>※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푸드트럭 영업자 제출) |

▼

| | | |
|---|---|---|
| 10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위생교육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br>휴게업중앙회(휴게음식점영업), 외식업중앙회(일반음식점영업)<br>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br>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br>※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 | |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br>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br>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br>※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

▼

| | | |
|---|---|---|
| 11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br>및 수리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br>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br>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

▼

| | | |
|---|---|---|
| 12 | 사업자등록<br>신청 및 수리 |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br>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br>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
| ▼ | | |
| 13 | 푸드트럭 영업 개시 |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
| ▼ | | |
| 14 | 영업신고사항<br>변경 및 폐업신고 |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br>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br>※ 영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와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가 필요 |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쪽, 53쪽 참조>

※ 푸드트럭 상호선정

·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23조제1항).

· 상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4조 및 제22조).

※ 푸드트럭 옥외광고물 설치

· 푸드트럭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함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주차하여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참조).

※ 푸드트럭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창업』 콘텐츠의 <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와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융자 등 지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정책자금-정책자금안내-정책자금한눈에보기 참조).

- 정책자금 확인하기: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누리집
-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개별 공지사항을 참조)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상공인 기준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

· 기업마당 누리집(https://www.bizinfo.go.kr/)

## 1.2. 창업 준비

### 1.2.1. 영업 허용 장소 등

###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

※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에 따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0쪽 참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6쪽 참조).

- 테마파크: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테마파크업 영업장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영업 허용 장소

> ※ 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해당 지역의 조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푸드트럭 영업 허용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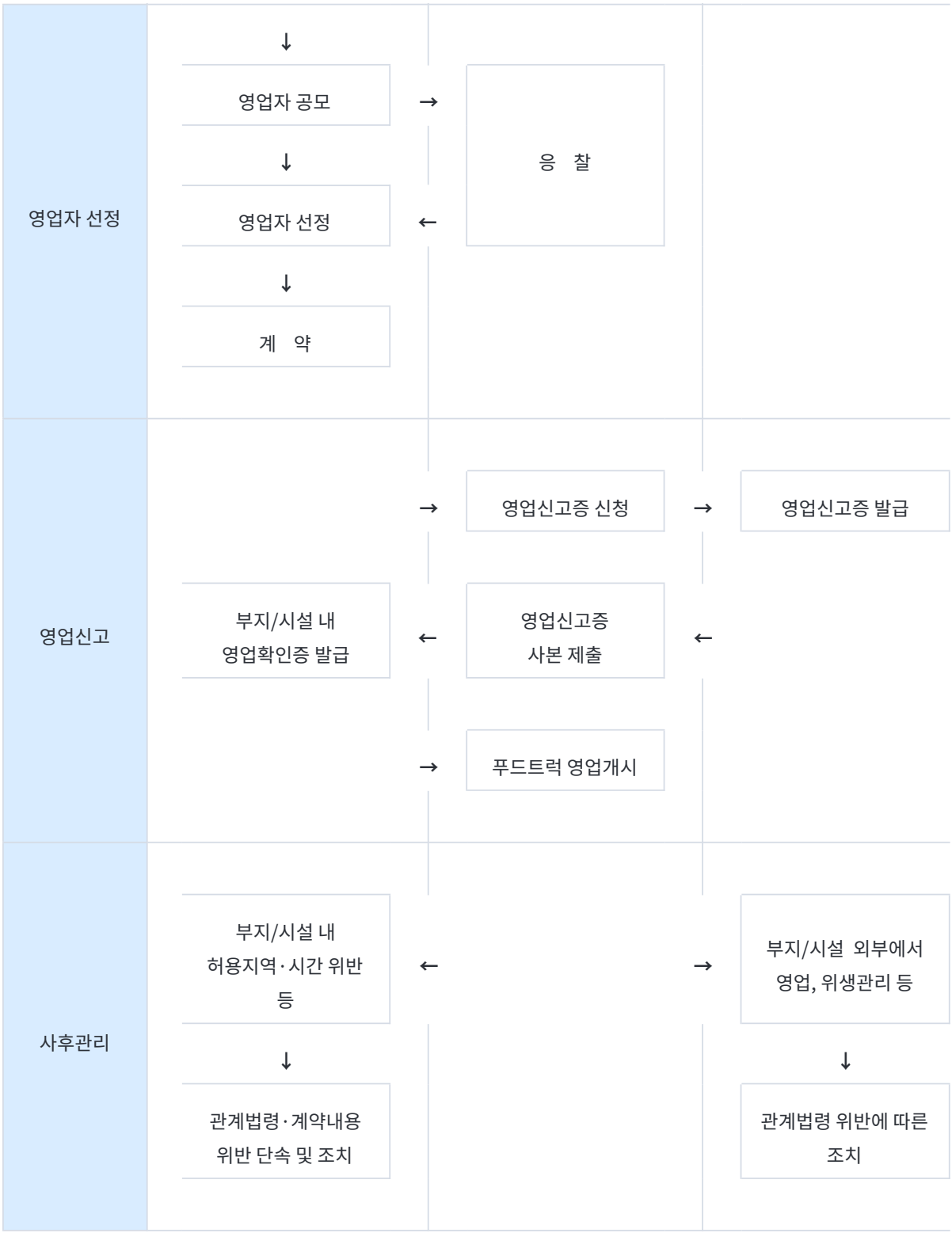
·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참조).

## 부지·시설 허가 절차도

※ 아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부지마다 세부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부지별 소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매뉴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통 절차

| 단 계 | 부지/시설 관리주체 | 푸드트럭 영업자 | 지방자치단체 위생담당부서 |
|---|---|---|---|
| 입지 검토 | 입지선정 등<br>↓<br>영업지역 표시 | | |




Q.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영업은 전부 불법인가요?

A. 푸드트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가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참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공동주택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단지가 허용 장소일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Q. 영업 허용 장소로 가서 푸드트럭 영업을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A.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참조), 이는 ①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지원, ②선정자의 시설 사용계약의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1.2.2. 공개모집 및 계약체결

#### 공개모집을 통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 공개모집

▪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 행사·축제·이벤트 공고문,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면적·기간, 사용료, 이동영업 여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일자·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쪽 참조)

**※ 푸드트럭 영업 방법**

| 구분 | 내용 |
|---|---|
| 이동영업 |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여러 장소를 지정한 후, 이들 장소에 대하여 선정된 여러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 |
| 고정영업 |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개별 장소를 지정한 후, 그 각각의 장소들에 대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 |
| 일시적 영업 | 행사·축제·이벤트 등을 개최하면서 일정한 푸드트럭 영업 공간을 마련한 후, 선정된 한 사업자 또는 여러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 |

**·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이동영업 사업자들은 지정된 푸드트럭 영업장소들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짐**
**√ 이동영업 사업자들은 개별 영업장소에 대한 여건을 파악한 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 푸드트럭**

**이동영업**
**사업자들간의 영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계획이며, 장소별로 영업시간(시간별·일자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연별·분기별·반기별 등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사업자**
**상호 간에 영업시간 및 장소를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조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트럭 이동영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소별로**
**총 사용시간을 설정한 후, 그 시간 범위 내에서는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9-10쪽, 14쪽 참조)**

### 선정 방식 및 선정 기준

-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 추첨 방식과 평가 방식 중 평가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1-12쪽 참조).
  - 공개 추첨 방식: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 평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푸드트럭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영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야 함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다음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2쪽 참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 체결

### 입점 조건

※ 아래의 내용은 “서울식물원 2024년 해봄축제 푸드트럭 모집공고”, “제11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푸드트럭 영업자 공고”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등의 푸드트럭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였으며, 공고마다 서류 양식 및 참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내 참가 조건 예시**

◈ 공통 제출 서류(해당 공고 붙임 서식 이용)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또는 참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등
◈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영업 품목) 신청서에
기재된 메뉴 외 판매는 금지
(영업 신고) 영업
신고 완료 후 행사 당일 영업 가능
(영업행위) 푸드트럭은
허용 시간·허가구역 내에서만 영업 가능
(사업자등록 및 보험) 영업
개시 전까지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고 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전기, 상수도 등)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가스·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음
(폐기물 처리) 조리
과정 중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 포장 용기 등 폐기물은 자체 수거·처리
(결제 방법) 카드
결제 단말기 개별 준비 필요
(분쟁 해결) 운영
시 민원 발생 예방과 발생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재산 보호)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사용·관리해야 하며, 소화기, 가스
관리 등 안전관리에 철저해야 함
(법령 준수) 공고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재산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고,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영업자 선정

▪ 공모 결과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데, 낙찰자가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기간은 이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21쪽 참조).

**Q.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영업자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 조건으로 할 경우 낙찰에 실패한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20쪽 참조).

### 사용료 납부

▪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설·장소의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16-17쪽 참조).

▹ 이동영업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2항):

| 구분 | 내용 |
|---|---|
| 일수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 / 365 × 사용일수 |
| 시간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 / 365 × 24 × 사용시간 |

▹ 고정영업의 경우: 공유재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 일시적 영업의 경우: 이동영업에서 정하는 일수별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따름

※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사용허가 받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사용요율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사용료 계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 및 『공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사용허가의 취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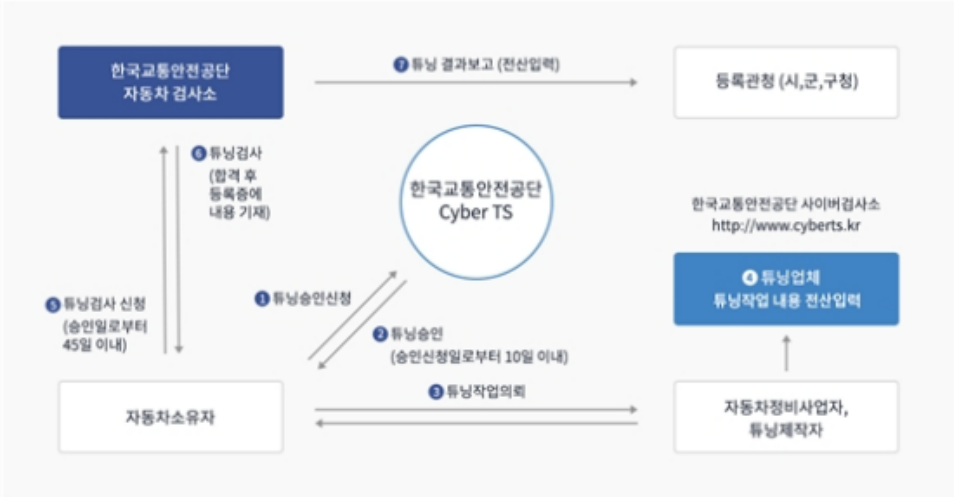
## 1.3. 영업시설 설치

### 1.3.1. 자동차 구조변경

####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

#####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도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

#### 자동차 구조변경 세부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항).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함
  - √ 튜닝 승인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 √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함

##### 튜닝검사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78조).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함

▹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함

√ 자동차검사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을 한 경우)

√ 튜닝 승인서

√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자동차제작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튜닝검사”란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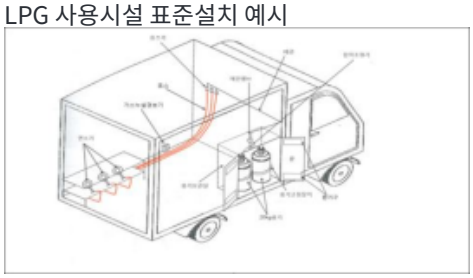
▪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튜닝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를 기재하고 튜닝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제3호 참고).

▹ 튜닝작업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 후 적합 시 자동차등록증에‘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 기재 후 발급해야 함. LPG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 ‘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로 기재함(한국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튜닝 절차』, 2쪽 참조)

## 푸드트럭 구조변경(튜닝) 승인 기준

### 푸드트럭 튜닝 승인 조건

| 구분 | 내용 |
|---|---|
| 개요 | 화물자동차를 이동 음식판매 자동차로 튜닝 |

| | | |
|---|---|---|
| 튜닝 승인 조건 | 구조 | 필수 설치 항목: 식수통, 폐수통, 음식 재료 보관시설, 판매대 |
| | | 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 및 음식 재료 보관시설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를 준용하여 확보할 것<br>다만, 음식물 및 오·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br>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의 크기는 10리터 이상일 것 |
| |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바닥 면적 0.5m²이상 및 하대높이 1.5m(경형 1.2m, 푸드트레일러 1.0m) 이상일 것 |
| | | 푸드트럭은 금속재 내장탑 또는 윙바디의 형태(양방향 가능) |
| | | 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전기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
| |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 사용시설 표준설치 예시<br> |
| | 행정 사항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시설(완성검사증 확인으로 검사 갈음) |
| | | LPG 설치 가능 여부는 산업통상부 고시 적용 |
| | | 하대제원은 내부에 설치된 장치를 포함하여 적용 |
| |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바닥 면적 0.5m²미만,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차종 변경(화물→특수)으로 튜닝 가능 |
| | 기타 | 트레일러를 푸드트럭으로 튜닝하는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
| |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가스안전공사 발급) 제출 확인 |
| | 승인 문구 | 푸드트럭(내장탑형, 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 |
| | 승인 사례 |   |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TS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171-172쪽 참조>

#### 제작차량 승인 절차

▪ "제작차량"이란, 화물차 구입 후 튜닝을 하는 경우가 아닌 최초부터 푸드트럭 또는 푸드 트레일러로 제작된 차량(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푸드트럭 또는 푸드 트레일러로 제작하는 경우)을 말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튜닝 절차』, 3쪽 참조).

| 기술검토 신청 | ▶ | 서류심사 (제원통보) | ▶ | 자동차 제작 | ▶ | 안전검사 | ▶ | 안전검사증 발부 |
|---|---|---|---|---|---|---|---|---|
| 자동차 제작자 | | 한국교통 안전공단 | | 자동차 제작자 | | 한국교통 안전공단 | | 한국교통 안전공단 |

※ 튜닝 승인 신청 및 튜닝검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2.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액화석유가스(LPG, LP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절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LP가스시설 설치 의뢰 | ▶ | LP가스시설 시공 | ▶ | 완성검사 신청 | ▶ | 완성검사 | ▶ | 완성검사증 발부 |
|---|---|---|---|---|---|---|---|---|
| 푸드트럭 영업자 | | 가스시설 시공업자 | | 가스시설 시공업자 |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1항·제2항).

※ "가스시설시공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제1항 참조).

▪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별지 제45호서식).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3항 단서).

##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 안전 수칙

### 안전 유지·점검·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 푸드트럭 영업자는 차체 내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할 때 다음의 안전 유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 제2호가목).

-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 습포나 40℃ 이하의 더운물을 사용할 것
-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차 내에서의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주밸브 및 용기의 밸브를 잠가 놓을 것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는 긴급사태 발생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이 확보된 곳에 주차할 것
-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않을 것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에는 가스사용시설에 연결된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두지 않을 것

▪ 가스 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 제2호나목).

▪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 제2호다목).

※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https://cyber.kg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4. 사전 위생관리

### 1.4.1.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식품위생교육 이수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참조).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참조)

##### 신규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
| 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주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 | 일반음식점영업: 한국외식업중앙회(https://www.ifoodedu.or.kr/) 주관 | |
| | 제과점영업: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주관 | |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교육시간 : 6시간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
| | 교육방법: 집합교육 | |
| 수료증 |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참조).

√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일반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 식품위생교육 신청은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창업』 콘텐츠의 <위생 관리-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참조).

▹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신규 건강진단 실시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
| 실시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br>「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 |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
| 수수료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참조).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

·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4항).

※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참조).

## 2. 푸드트럭 영업

### 2.1.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2.1.1. 영업신고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참조).

**영업신고 절차**

| 담당 | 신고인<br>(푸드트럭 영업자) | 처리기관(담당 부서)<br>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
|---|---|---|
| 단계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신고증 발급 | 결재 |
| | | ↓ |
| | | 시설 확인 |

[금천구청(https://www.geumcheon.go.kr/)-보건소·그 밖의 보건소 누리집 참조]

**※ 푸드트럭 영업신고 구비서류**

·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 누리집 참조).

√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푸드트럭 허용 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서류)

·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참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푸드트럭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식품 관련 영업신고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참조).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참조).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추가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2016.6.1. 1면 참조)

**Q. 영업장소 추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영업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하여 영업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 축제 등 한시적인 행사 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장소 외에 축제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2016.6.1. 3면 참조)

※ 영업신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건소의 위생 담당 부서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2.1.2. 사업자등록

#### 푸드트럭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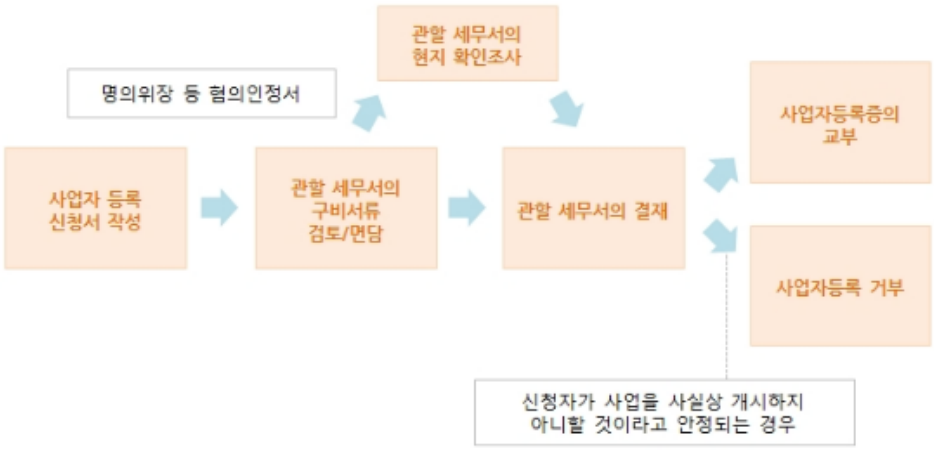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출처: 생활혁신형아이디어톡톡 누리집(https://idea.sbiz.or.kr/)]

※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참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혜택**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09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 일반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4백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간이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br>공제세액 = 납부세액<br>※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15%<br>※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위의 납부의무가 면제됨(「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본문) |

[출처: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위반 시 제재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 및 과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창업』 콘텐츠의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 및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

## 2.2. 푸드트럭 위생관리

### 2.2.1. 위생·시설 관리 기준

#### 푸드트럭 위생관리 기준

#### 식품 등의 취급

▪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참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 | 위반 시 필요한 시정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br>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위반 시 관계 공무원이 위반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령(「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br>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br>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
|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

## 푸드트럭 시설관리 기준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

> ※ 식품접객업 공통 시설기준 및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세부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및 나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6호 참조).

▪ 위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참조).

> ※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서울시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서 식품접객업체 자가점검 항목을 다운받아 외식업 위생관리 자가점검을 해보세요.

## 2.2.2. 위생 취약점 및 위생관리 수칙

※ 아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서, 푸드트럭 위생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푸드트럭 위생 취약점

### 푸드트럭 위생 취약점

| 구분 | 내용 |
|---|---|
| 개인위생 취약점 | 장소에 따라 자주 손을 씻기 어려운 환경이고,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취약함<br>위생모, 위생복 또는<br>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거나 청결하지 않은 위생복 또는 앞치마 착용<br>원료취급, 돈 계산, 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주로 1인의 작업자가 영업하다 보니 전염성 질환이나 손에 상처가 있어도 조리하는 경우 발생 |
| 식품위생 취약점 | 물에 대한 위생관리 미흡<br>√ 식품의<br>조리·세척에 사용하는 위생적인 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시 위생관리가 어려움<br>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교차오염 우려<br>√ 위생적인<br>원료 보관, 식품 조리, 제공, 세척을 위한 공간 제약: 조리 중 칼, 도마 등 조리도구의 구분관리나 세척이 되지 않아 교차오염 우려가 큼<br>√ 원료의<br>전처리가 주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생관리 미흡<br>쓰레기나 오·폐수의 위생적 처리가 미흡하고, 영업시간 이후 세척·소독이 미흡<br>미리 조리한 음식이나 간장, 단무지<br>등을 장시간 진열 노출 |
| 환경위생 취약점 | 야외에 노출된 환경으로 미세먼지,<br>벌레, 빗물 등 이물 혼입 우려<br>√ 영업시간<br>이후 푸드트럭의 시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남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 쥐, 해충, 야생동물의 침입 우려<br>특성상 전기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생 가능<br>√ 냉장, 냉동보관 온도 변경, 조리공간의 부적절한 조도 가능 |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56-57쪽 참조>

## 개인 위생·안전관리 세부요령

### 개인 위생관리 핵심수칙

| 구분 | 내용 |
|---|---|
| 개인 건강관리 및 복장관리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음<br>손에 상처가 생긴 경우 상처부위를 감싸 물이나 식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함<br>항상 깨끗한 복장을 유지하고, 조리 중에 통화, 돈계산 등 다른 활동은 하지 않음 |
| 손 씻기 생활화 | 작업 시작 전, 생선·날고기·채소를 만지고 난 후, 화장실 이용 후, 돈 계산 후 등 수시로 손을 깨끗이 닦기 |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57, 60쪽 참조>

###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출처: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3쪽>

## 식품 위생·안전관리 세부요령

### 식품 위생관리 핵심수칙

| 구분 | 내용 |
| --- | --- |
| 식재료의 구매와 보관 | 필요한 양만, 유통기한 등 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br>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 생선·육류와 채소·가공식품은 서로 구분하여 냉장/냉동에 맞게 보관<br>포장을 뜯어 나누어 보관하거나 전처리한 식재료는 이름(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보관<br>보관 방법<br> |
| 식품의 조리·제공시 위생관리 |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충분한 양의 먹는 물을 식수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식수용 호스와 식수탱크, 얼음을 위생적으로 관리<br>가능하면 손님 주문이 있을 때에 바로 조리하도록 하고, 미리 조리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함<br>가열하는 경우 중심온도가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충분히 식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br>칼과 도마를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매번 소독하여 사용 |
| 세척과 살균·소독 관리 | 영업이 끝나면 숟가락, 물컵 등 식기류와, 칼, 도마 등 조리도구, 작업대, 행주는 깨끗이 세척한 후,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 |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58, 63쪽 참조>

※ 물과 얼음의 위생관리

· 먹는 물 관리기준에 적합한 물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수탱크와 호스는 식품용으로만 사용

√ 지하수의 경우 정기적인 음용수 검사를 의뢰(일부 항목에 대하여 1년에 1회, 전 항목에 대하여 2년에 1회 검사)하여 검사성적서를 구비

· 수원별 위생관리

√ 점용허가 기관/시설에 설치된 설비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경우 식수탱크와 급수 호스를 구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먹는 물을 식수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고 급수 호스, 식수 탱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각 수원별 용수 검사성적서 구비, 식수탱크와 호스는 정기적으로 세척

· 식품에 사용하는 얼음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구분 관리해야 함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66쪽 참조)

## 환경 위생·안전관리 세부요령

### 환경 위생관리 핵심수칙

| 구분 | 내용 |
|---|---|
| 시설·설비 재질과 구조 | 외부에 노출되어 이동하는 특성상 내구성을 갖추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br>이동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영업차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br>내수성을 갖추어 손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br>빗물, 먼지, 곤충 등의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공간의 옆면과 윗면은 폐쇄된 구조를 권장함<br>영업 이후에는 쥐 등 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가 완전히 폐쇄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함<br>냉장고, 냉동고 등 적절한 온도에서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br>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하는 식수 탱크와 전용 호스를 구비<br>1일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오물통 및 폐수탱크를 구비<br>조리공간의 조명이 깨져 음식에 혼입되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
| 시설·설비 위생관리 | 영업이 끝나면 사용한 조리대는 반드시 세척·소독하고, 특히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주변을 수시로 닦아 위생적으로 관리<br>영업 전에 전기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냉장고 등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매일 체크<br>야간에 조리하는 경우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포충 등 설치 등의 방제 조치를 취함<br>식수탱크와 호스, 냉장고 내부는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br>소독제, 세제, 돈 등은 식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 돈을 위생복이나 앞치마 속에 넣어두면 오염 우려 크므로 금지<br>오물통과 폐수탱크는 식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며, 입구 주위를 상시 위생적으로 관리 |
| 주변 환경 위생관리 | 영업장소가 쓰레기장, 오수처리장 등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에 위치할 것<br>식재료와 용기 보관, 음식의 조리, 제공이 차량 또는 판매대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 밖에 식재료, 용기를 보관하거나 음식 진열대를 설치해서는 안 됨<br>영업장소 주변은 영업 전후에 위생적으로 관리: 영업장소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바닥 일부가 파손되어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오염 우려 큼<br>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림: 오수를 바닥에 그대로 뿌리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야생동물, 해충의 침입이 없도록 함 |
| 차량 관리 | 영업이 끝나면 남은 식재료와 쓰레기는 모두 치우고 세척·소독한 후, 조리공간을 봉쇄하여 쥐, 해충 등 야생동물의 침입이 없도록 함<br>영업이 끝나고 장소를 이동하여 주차할 경우, 주위에 생활쓰레기가 있거나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장소는 피함<br>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양막으로부터 먼지 등 이물이 혼입될 우려 있으므로 위생적으로 관리 |

<출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1-72쪽 참조>

## 2.3. 운영 시 준수사항

### 2.3.1.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1.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5.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정하는 사항

> ※ 가격표시제
>
>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 청소년 관련 금지사항

▪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 유흥 접객, 알선 등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br>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본문)<br>※ 다만, 위 소비기한 경과에 관한 3.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위해를 없애도록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
| 청소년 관련 금지사항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br>※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 유흥 접객, 알선 등 금지 | 이를 위반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8조제1호) |
|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

※ 식품접객영업 시 준수사항 및 고객과의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운영』 및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식업 위생관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푸드트럭 영업사항의 변경 및 폐업

### 3.1. 영업사항의 변경

#### 3.1.1. 변경신고

#####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참조).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 ※ 식품 관련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사업자등록 사항의 정정신고

**정정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참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4.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함)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위 정정신고의 1. 및 11.의 경우: 신고일 당일

▸ 위 정정신고의 2.부터 10.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 정정신고 방법

▪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3.2. 푸드트럭 폐업

#### 3.2.1. 폐업신고

※ 푸드트럭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식품 영업에 대한 별도의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대상**

▪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참조).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참조).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방법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위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폐업 전 부가가치세 완납

▪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참조).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수시부과한 세액

> ※ 식품영업의 폐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자등록 폐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